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교에 대한 이전·증설 특례 삭제〉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02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학교에 대한 이전·증설 특례 삭제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1.
3. 회부연월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 특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 본 현행

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중·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대학교에 대한 이전·증설 특례 삭제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로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구역에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로 한정하여 대학 등을 특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u>학교</u> 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 -----.
②·③ ¹⁾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²⁾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각 권역에서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함)³⁾의 신설·증설·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은 그에 대한 특례로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⁵⁾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내 권역별 대학 등 학교 신설·이전·증원 규제 현황에 관한 상세는 별첨자료를 참조.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서 생략)

역에 해당하더라도 총량규제 등의 제약 없이⁶⁾ 대학등을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미군공여구역법」의 특례를 적용받아 일부 전공학과를 제2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⁷⁾

<「미군공여구역법」 특례로 수도권 캠퍼스를 확장한 대학 현황>

비고	학교명	본교			수도권 캠퍼스		이전 인원
		위치	정원 변동		위치	정원 변동	
2024 학년도	동양대	경북 영주	586명→536명 (50명 감원)	⇒	경기 동두천	404명→474명 (70명 증원)	50명
	경동대	강원 원주	935명→842명 (93명 감원)	⇒	경기 양주	619명→712명 (93명 증원)	93명
2025 학년도	동양대	경북 영주	536명→381명 (155명 감원)	⇒	경기 동두천	474명→629명 (155명 증원)	155명
	경동대	강원 고성*	1명→0명 (1명 감원)	⇒	경기 양주	712명→713명 (1명 증원)	1명
	예원예술대	전북 임실	142명→46명 (96명 감원)	⇒	경기도 양주	89명→185명 (96명 증원)	96명
	중부대	충남 금산	820명→473명 (347명 감원)	⇒	경기도 고양	865명→1,172명 (307명 증원)	307명

* 외국인 유학생 전용 캠퍼스로 정원 외 전담학과로 운영 예정

※ 자료 : 교육부(2024.6.30. 기준)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7) 「중부대 학과 이전 승인…금산 주민들 “정부가 지역 경제 말살”」, 2024.6.23. 경향신문

-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고양캠퍼스로…학교 “생존해야”
- 내년 충청캠퍼스 입학정원 820명→473명…4개 전공 신입생 안 뽑아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여 비수도권 소재 대학등의 수도권 이전과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지방대학 등의 육성과 경쟁력 유지·강화를 통하여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등 주변·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⁸⁾을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대학 이전 등에 관한 특례의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목적⁹⁾과 그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그리고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대학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바¹⁰⁾, 그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지역개발의 정체를 감내하였던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고려할 때, 반환

8)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조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및 제123조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등을 통하여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전체 공여면적 9,510만㎡ 중 경기도가 74%(7,069만㎡),
전체 반환면적 14,249만㎡ 중 경기도가 97%(13,787만㎡)에 해당('23.12월 기준)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에서 대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¹⁾

문 의 처
02)6788-5336

11)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경기도내 권역별 대학규제 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목 적		- 과밀화 방지 -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 주민불편 해소
인 구 (1,359만명)		695만명(51.2%)	538만명(39.6%)	127만명(9.3%)
면적 (10,199km ²)		1,169km ² (11.5%)	5,200km ² (51.0%)	3,830km ² (37.6%)
해당 시·군 ※밀줄은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소재지		14개 시 <u>의정부</u> , 구리, 남양주(일부), <u>하남</u> , <u>고양</u> , 수원, <u>성남</u> , 안양, 부천, 광명, <u>과천</u> , 의왕, 군포, 시흥(일부)	14개 시·군 <u>동두천</u> , 안산, 오산, <u>평택</u> , <u>파주</u> , <u>남양주(일부)</u> , 용인(일부), <u>연천</u> , <u>포천</u> , <u>양주</u> , 김포, <u>화성</u> , 시흥(반월특수지역), 안성(일부)	8개 시·군 이천, <u>남양주(일부)</u> , 용인(일부), 가평, <u>양평</u> , 여주, <u>광주</u> , 안성(일부)
대 학	신 설	금 지 ※예외(허용) ①총량규제 내의 산업대학· 전문대학·대학원대학 신설 ②일정한 간호전문대학을 간호대학으로 변경(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③대학·전문대학간 통폐합으 로 인한 일정한 대학 신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금 지 ※예외(허용) ①총량규제 내의 산업대학· 전문대학·대학원대학 신설 ②50인 이내의 소규모대학 신설(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③대학·전문대학간 통폐합으 로 인한 일정한 대학 신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금 지 ※예외(허용) ①총량규제 내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신설(수도권정 비위원회 심의) ②50인 이내의 소규모대학 신설(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③대학·전문대학간 통폐합으 로 인한 일정한 대학 신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 전	부분 허용 ①과밀억제권역 간 (서울로 이전은 불허,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②대학·전문대학간 통폐합에 따른 일정한 대학 이전 허용(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분 허용 ①수도권⇒성장관리권역	부분 허용 ①자연보전권역 간의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 모대학 이전
	증 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학·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일정한 대학의 증설 허용(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각원 설치를 위한 증원 허용		
		신설된 후 8년 이내인 소규모대학의 증원은 총량 규제와 별도(정원의 100% 이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